

# 사내외 포상에 대한 부상 수여 요령

제정 : 2017. 7. 25.

제1차 개정 : 2018. 12. 21.

제2차 개정 : 2020. 5. 15.

제3차 개정 : 2024. 6. 14.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포상 및 시상 대상자에게 부상(副賞)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방법) ① 부상은 현금 또는 동일 가액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 담당 부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가액의 다른 부상을 줄 수 있다.

③ 사내외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이미 현금성 부상(포상금·보상금 등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이 요령에 따른 부상 수여 시에는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수여기준) 사내외 포상에 대한 부상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부상 금액 한도 이내에서 각각 수여한다.

구 분		부상 금액 한도
사내 포상	올해의 K-SURE人 대상 <sup>주)</sup>	1,000,000원
	올해의 K-SURE人 우수상 <sup>주)</sup>	<u>700,000원</u>
	올해의 K-SURE人상 <sup>주)</sup>	300,000원
사외 포상	훈장	1,500,000원
	포장	1,200,000원
	대통령 표창	1,000,000원
	국무총리 표창	800,000원
	국무위원 표창	700,000원
	기타	450,000원

주) 「인사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사내 포상 명칭의 변동이 있을 경우 상기 표의 부상 금액 한도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4조(증빙의 징구) 제3조의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 대상자로부터 수령증 또는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

(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시행일) 이 요령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